

# 공정한 동행

• **VOL. 07**

2025  
SPRING+SUMMER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공정거래 INSIGHT

### 공정거래 관점

6

#### 공정거래 동향

경업금지와 관련된  
미국의 경쟁법상 규제 동향과 시사점

### 노무 관점

12

#### 공정거래 동향

미국의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 제한 관련 동향

20

#### 공정거래 동향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개선 효과 분석 사례

26

#### 이슈&논평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32

#### 이슈&논평

후방시장 사업활동 방해와  
정상적 거래관행 기준

## 공정거래 STORY

42

#### 사례로 알아보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액 산정서  
꼼꼼히 확인 필요

44

#### 사례로 알아보는 약관 분쟁조정

계약 해지 시 업무 착수 비용을  
명목으로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



## 조정원 NEWS

48

조정원 뉴스 Ⅰ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활동

52

조정원 뉴스 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55

조정원 뉴스 Ⅲ

공정거래문화 확산

59

조정원 뉴스 Ⅳ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

## 컬처& 라이프

64

사계절 공정여행

자연에서 짓다·놀다·먹다 그리고 읽다  
고창

70

우리가 몰랐던 위인 이야기

공정한 언론의 선구자  
조지프 풀리처

72

문해력이 실력

맞춤법,  
나도 모르게 틀리고 있었다

74

조정원 NOW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식

## 공정한 동행 2025 SPRING+SUMMER Vol. 07

발행일 2025년 6월 발행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발행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최영근  
총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연홍 기획편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교육홍보팀장 박성찬 누리집 <http://www.kofair.or.kr>



<공정한 동행>은 조정원 홍보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하여 발간한 책자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기고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책자의 PDF 파일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 내용의 무단 도용과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공정거래 INSIGHT

6

공정거래 관점

공정거래 동향

경업금지와 관련된

미국의 경쟁법상 규제 동향과 시사점

12

노무 관점

공정거래 동향

미국의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 제한 관련 동향

20

공정거래 동향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개선 효과 분석 사례

26

이슈&논평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32

이슈&논평

후방시장 사업활동 방해와

정상적 거래관행 기준

● ● ●

국내외 공정거래 동향분석과 전문가의 견해를 한눈에!

미국의 경업금지 규제 동향부터 후방시장 대법원 판결 평석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 관점

## 경업금지(Non-Compete)와 관련된 미국의 경쟁법상 규제 동향과 시사점



김 경 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 노동시장과 경쟁법

경쟁법은 주로 사업자가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호 경쟁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해왔다. 자연스레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이면의 노동이나 고용 분야는(현실적으로는 일정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경쟁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 온 듯하다. 여기에는 노동이나 고용이 어느 국가에서나 별도 관련 규제의 영역이었다는 점도 '자유로운 경쟁'이 전제가 되는 경쟁법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온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업금지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경쟁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해 요구하는 경업금지가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례들이 있는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8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경쟁당국의 시선을 짐작할 수 있다.<sup>01</sup>

## 2

## 미국에서의 경업금지 관련 규제와 소송의 현황

한편, 미국에서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경쟁촉진 정책 기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계기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the Fair Trade Commission, 이하 “FTC”)가 2024. 4. 23.자로 3 대 2의 명확한 당파적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규칙(Non-Compete Clause Rule, 이하 “경업금지조항 규칙”)<sup>02</sup>을 채택한 바 있다. FTC는 경업금지조항이 불공정한 경쟁 방법으로서 FTC 법 제5조의 위반이라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단발적으로나마 제기되어 오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법적 개입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내어 사회적으로 치열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본고에서는 경업금지조항 규칙과 관련된 미국에서의 논의, 소송 및 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한다.

### 1. FTC 경업금지조항 규칙의 개요

#### 1) 경업금지조항의 개념 정의

‘경업금지조항’은 간단히 말해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 취업 또는 경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초래하는 모든 고용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고용조건은 고용계약이나 직장의 근로규칙 기타 정책 등에 포함된 내용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된 조건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2) 경업금지조항 규칙의 주요 내용

경업금지조항 규칙은 고용주가 근로자와 경업금지조항을 체결·집행하거나, 이를 시도하거나, 근로자에 대해서 경업금지조항이 적용됨을 표시하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방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 동시에, 기존 경업금지조항(고위 임원이 아닌 근로자와 체결된 조항)에 대해서, 규칙 발효일까지 경업금지조항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며 법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개별 서면 통지를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고용주에 부과하였다.<sup>03</sup> 다만, 일정한 고위 임원(Senior Executive)과의 사이에서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경업금지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되, 규칙의 발효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경업금지조항 규칙은 (i) 경업금지의 정의도 포괄적이고, (ii) 대상이 되는 ‘근로자(Worker)’의 정의 역시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직원, 독립 계약자, 외부 실습생, 인턴, 자원봉사자, 견습생, 개인 사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등, 규제 범위가 광범위한 특징이 있다.<sup>04</sup>

또한,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조항 규칙의 내용과 상충되는 모든 주법, 규정, 명령 또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우선하지만, 주법이 근로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sup>01</sup>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동 지침에서는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구입강제, 이익 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룬다.

<sup>02</sup> 16 C.F.R. Part 910 Non-Compete Clause Rule.

<sup>03</sup> 2025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이 의무는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이 2024년 7월 미국 상공회의소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국 전역에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고 있음.

<sup>04</sup>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고용한 직원은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 2. 경업금지조항(약정)에 대한 경쟁법상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의

FTC의 경업금지조항 규칙이 발표될 당시, 리나 칸 FTC 위원장은 경업금지조항을 임금의 저하와 혁신의 저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규칙을 환영한 반면, 이 규칙의 전면 시행을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들도 있었다.

경업금지약정의 철폐를 지지하는 주장 중 하나는, 경업금지약정이 노동자의 이직을 억제함으로써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오리건 주가 저임금 노동자의 경업금지약정을 금지한 후, 해당 노동자의 평균 시급이 2~3% 상승하였고<sup>05</sup> 5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그 상승폭이 6%까지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sup>06</sup> 이에 따르면 경업금지의 제한이 없어진다면 근로자들의 이직이 증가하여 기업 간에 인력쟁탈전을 심화시키므로 그 결과 임금이 상승하는 인과관계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은 특히 기술 위주의 산업 분야에서 인재의 순환과 지식 공유를 막아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므로, 이를 없애는 것이 혁신에 크게 기여하며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실리콘밸리)는 경업금지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스타트업 창업과 인재 이동이 활발했던 반면, 매사추세츠(보스턴)는 한때 경업금지를 허용해 인재 이동이 제한적이었기에 주 간 기술 발전에 차이가 있었다는 비교 사례가 거론된다.<sup>07</sup> 실제로 경업금지 집행을 완화한 주는 특허 출원이 늘고, 집행을 강화하면 특허 출원 활동이 16~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up>08</sup> 이 연장선상에서,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제한이 없으면 직원이 회사를 떠나 직접 창업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이 자유로워져 새로운 기업 탄생과 경쟁 촉진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다.<sup>09</sup>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경업으로 인한 영업비밀과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이다. 비밀유지계약의 위반이나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소송 등을 통한 사후 구제는 한계가 있어서, 사전 억지력의 측면을 고려하면 경업금지조항이 더 낫다는 것이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을 강화할수록 실질적으로는 경업금지약정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직원 훈련 및 육성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력을 양성해도, 경쟁사가 스카우트하면 헛일이 될 수 있다. 그나마 경업금지약정이 있으면 직원이 일정 기간 이탈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어서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교육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아예 교육투자 자체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3. 관련 소송 현황

이러한 찬반양론 속에 경업금지조항 규칙 제정 직후부터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여러 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나오면서 극심한 법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1)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Ryan LLC 사건, (2)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의 ATS Tree Services 사건, (3) 플로리다 중부지방법원의 Properties of the Villagers 사건을 소개한다.

#### 1) Ryan LLC 사건(Ryan LLC v. FTC)<sup>10</sup>

텍사스 소재 세무법인인 Ryan LLC는 FTC가 규칙을 확정하자마자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에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나 단체들도 이후 원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는데, 원고들은 (i) 불공정 경쟁방법에 대한 실체적 규칙 제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FTC가 법상 권한을 일탈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이 규칙은 무효이고, (ii) 규칙 제정 과정도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는 문제로 인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텍사스 법원은 우선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 원고 Ryan 및 참가인들에 대해서만 규칙 시행을 일시 정지했다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통해 원고 측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FTC의 경업금지조항 규칙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무효화(Vacate) 하였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로, 이에 따라 규칙의 발효 자체가 봉쇄되었고, 원고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고용주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텍사스 법원의 판단 중 FTC의 APA 위반



<sup>05</sup> Michael Lipsitz and Evan Starr, Low-Wage Workers and the Enforceability of Non-Compete Agreements (October 19, 2020), Management Science,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452240>.

<sup>06</sup> Evan Starr and Mike Lipsitz, Banning Noncompete Agreements Benefits Low-Wage Workers, Promarket (Oct 18, 2019), <https://www.promarket.org/2019/10/18/banning-noncompete-agreements-benefits-low-wage-workers>.

<sup>07</sup> Matthew Johnson, Michael Lipsitz, Alison Pei, "Innovation and the Enforceability of Noncompete Agreements: Evidence from State Law Changes", (2023), [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lipsitzjohnsonpei.pdf#:~:text=Agreements%20www.patents%20granted%20in%20a](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lipsitzjohnsonpei.pdf#:~:text=Agreements%20www.patents%20granted%20in%20a)

<sup>08</sup> Matthew S. Johnson, Michael Lipsitz & Alison Pei, Innovation, Inventor Mobility, and the Enforceability of Noncompete Agreements, NBER Working Paper 31487 (Jul 2023), <https://www.nber.org/papers/w31487>.

<sup>09</sup> <https://farmaction.us/2024/04/23/ftcs-ban-on-restrictive-noncompete-agreements-will-boost-wages-unleash-entrepreneurship/>

<sup>10</sup> Ryan LLC v. Fed. Trade Comm'n, 739 F. Supp. 3d 496 (N.D. Tex. 2024).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권한의 남용)은, FTC가 모든 산업과 근로자들에게 왜 전면적인 금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나 근거 없이, 나아가 더 충분한 예외나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광범위한(One-size-fits-all) 금지를 도입하였다는 점 및 경업금지약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수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특정 사례의 폐해만을 강조하는 등, 일관성 없고 결함 있는 증거의 문제를 지적하였다.<sup>11</sup>

## 2) ATS Tree Services 사건(ATS Tree Services, LLC v. FTC)

수목 관리업을 영위하는 ATS Tree Services, LLC(이하 “ATS”)는, 자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경업금지조항이 규칙으로 무효화되면 영업상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규칙의 효력을 자사에 한해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ATS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ATS가 주장한 것은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제적 비용이나 기존 계약의 상실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앞서 Ryan 사건과는 달리, FTC법 어디에도 FTC의 권한이 절차적 규칙에 한정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막기 위한 실체적 규칙제정 권한도 포함되며, 과잉입법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sup>12</sup>

## 3) Properties of the Villagers 사건(Properties of the Villages, Inc. v. FTC)

대규모 부동산 중개회사인 Properties of the Villages, Inc.가 자사 소속 부동산 중개인들이 모두 경업금지약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자사에 한해서라도 FTC 규칙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며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원고에 대해서만 규칙 집행을 일시 금지하는 반면,<sup>13</sup> 전국적 효력정지나 규칙 전체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데, 그 이후에 Ryan 사건의 전국적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법원은, 경제적·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행정기관이 수행할 때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 근거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i) 이 규칙이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장을 광범위하게 재편할 수 있고, (ii) 경업금지약정의 규율은 전통적으로 주(州) 관할로 여겨져 왔는데 이 규칙은 이러한 전통적 영역에 심각하게 개입하며, (iii) 과거 FTC를 비롯한 어떤 연방기관도 경업금지약정을 본질적으로 규제한 적이 없는 것을 보아도 이는 FTC의 현저한 권한 확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FTC의 조치에는 위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 4. DOJ-FTC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관행에 대한 반독점 공동 지침 (Antitrust Guidelines on Business Practices that Impact Workers)

2025년 1월에는 DOJ-FTC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관행에 대한 반독점 공동 지침’이 발표되었다.<sup>14</sup> 이 지침은 경업금지계약, 임금고정계약 및 고용유인금지(No-poach)계약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관행 중 무엇이 어떤 경우에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2016년에 제정되었던 인적자원을 다루는 전문가들을 위한 반독점 지침(2016 Antitrust Guidance for Human Resource Professionals)을 대체하였다.

## 5. 트럼프 제2기 행정부하에서의 전망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앞서 FTC에서 두 지침이 통과될 때 이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Andrew Ferguson 이 FTC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공화당 주도의 FTC는 적극적 행정규칙 제정과 빅테크 기업 견제, 노동시장 경쟁 촉진과 같은 진보적 안건의 추진보다는, 전통적인 소비자후생 기준과 법률 명문의 범위 내 사건에 집중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FTC는 전국적인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소송(위 Ryan LLC사건)의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월 말, Ferguson 위원장은 FTC에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경쟁제한적인 노동관행 규제를 집행 우선순위로 두는 공동 노동 태스크포스(joint work task force)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였다.<sup>15</sup> Ferguson 위원장의 세부지침에는 인력 빼가기 금지(No-poach), 유인 금지, 또는 고용 금지약정, 임금 담합 등 전형적인 경쟁제한행위 외에, Ferguson 위원장이 규칙제정 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경업금지약정이나 경쟁고용주로 이직하기 위한 근로계약 해지 시 페널티도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FTC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정책 방향성과 관련한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6</sup> 또한, 연방의 경쟁법 집행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고용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에서의 법 집행인데, 연방과 별도로 각 주 차원에서의 경업금지조항이나 약정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근 들어 각 주 정부의 경쟁법 집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FTC의 경업금지조항 규칙은 그 자체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나 공정한 경쟁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수면위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로 인한 경제·산업 측면에서의 파급효과가 무엇보다도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 또는 노동자와 기업의 대립 문제로만 조망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경제의 균형과 발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충분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의 이동 비율과 그에 따른 임금의 변화,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력 운용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은 산업별 경쟁환경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up>11</sup> Ryan 판결에 대해서는 FTC가 항소하여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에 계속 중임.

<sup>12</sup> ATS Tree Servs., LLC v. Fed. Trade Comm'n, No. CV 24-1743, 2024 WL 3511630 (E.D. Pa. July 23, 2024); ATS 사건 이후 원고 측은 추이를 지켜보다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는 텍사스 Ryan 판결로 규칙이 전국 효력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sup>13</sup> Props. of the Villages, Inc. v. Fed. Trade Comm'n, No. 5:24-CV-316-TJC-PRL, 2024 WL 3870380 (M.D. Fla. Aug. 15, 2024); 이 결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항소하여 제11연방항소법원에 계속중임.

<sup>14</sup> US DOJ & US FTC, Antitrust Guidelines for Business Activities Affecting Workers (Jan. 2025).

<sup>15</sup> Fed. Trade Comm'n, Press Release, FTC Launches Joint Labor Task Force to Protect American Workers (Feb. 26, 2025),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5/02/ftc-launches-joint-labor-task-force-protect-american-workers>.

<sup>16</sup> Andrew N. Ferguson, Directive Regarding Labor Markets Task Force (Feb. 26, 2025), [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memorandum-chairman-ferguson-re-labor-task-force-2025-02-26.pdf](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memorandum-chairman-ferguson-re-labor-task-force-2025-02-26.pdf).

노무 관점

## 미국의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 제한 관련 동향



백규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1

## 들어가며

미국에서는 기존에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D.C. 등의 주에서 주법령을 통하여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부터 연방 차원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는 2024. 7. 23. 「경업금지약정 제한 규칙(Non-Compete Clause Rule, 이하 “경업금지 제한규칙”)」을 제정하여 경업금지약정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큰 번복점을 맞게 되었다.

## 2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의  
사용자에 의한  
경업금지약정  
제한 동향

## 가.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제정 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 7. “미국 경제 경쟁 촉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하였다. 해당 행정명령은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로 하여금 이직의 자유(worker mobility)를 불공정하게 제약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촉구(Encourage)하였다.<sup>01</sup> 위 행정명령이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않았으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2024. 4. 23. 경업금지 제한규칙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규칙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및 제6조 g항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을 ‘불공정한 경쟁방법(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으로 보았다. 이어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이미 존재하는 경업금지약정을 고위 임원(Senior executive)<sup>02</sup>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행예정일이었던 2024. 9. 4.부터는 새로운 경업금지약정의 체결 및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 다만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비밀유지계약, 근로계약 중의 경업금지약정, 은행·보험사·비영리단체 등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용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가맹점주와 가맹사업자 간의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두었다.

<sup>01</sup> FACT SHEET: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미 백악관, 2021. 9. 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7/09/fact-sheet-executive-order-on-promoting-competition-in-the-american-economy/>

<sup>02</sup> 고위 임원은 ‘(i)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Policy-Making Position)에 있으면서 (ii) 직전년도 총 임금 151,164달러를 받은 자(직전년도의 일부만 근무한 경우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151,164달러를 받은 자)’로 정의되었다.

## 나. 연방지방법원의 경업금지 제한규칙 적용 제한 판결

연방거래위원회의 발표 이후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각지에서 경업금지 제한규칙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은 2024. 7. 3. 미국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sup>03</sup> 플로리다 중부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Florida) 역시 2024. 8. 14. 별개의 사건에서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sup>04</sup> 이후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은 2024. 8. 20. 본안 판결을 통하여 경업금지 제한규칙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였다.<sup>05, 06</sup>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은 (i) 연방거래위원회는 규제기관(Agency)으로서 그 활동 범위는 의회가 명확하게(Explicit) 위임한 권한 내로 제한되는데, 연방거래위원회법상 연방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관련한 실체적 규칙(Substantive rule)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ii)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그 정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업금지약정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Unreasonably overboard)는 점을 그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위 판결로써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해당 사건에서만 아니라 미국 전국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연방거래위원회에 ‘심각한 타격(Significant blow)’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sup>07</sup>

## 다. 경업금지 제한규칙 적용 제한 판결 이후의 경과

### 1) 연방거래위원회와 미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내 경업금지의 제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24. 10. 18.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sup>08</sup> 이후 연방거래위원회는 2025. 1. 16. 미 법무부와 함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활동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Business Activities Affecting Workers, 이하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단 4일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sup>09</sup>

연방거래위원회는 위 반독점 가이드라인에서,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경쟁(Competition for labor)’을 보호한다고 천명하고, 경업금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한 경영관행에 대한 제재방침을 밝혔다.

1. 임금고정약정(wage-fixing agreement) 내지 스카우트 금지약정(No-poaching agreement)
2.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인력을 두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스카우트 금지약정
3. 임금 정보를 포함하여 경쟁법상 민감정보를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
4. 경업금지약정
5. 기타 제약적(Restrictive)이거나, 배제적(Exclusionary)이거나, 약탈적인(Predatory) 고용조건(비밀 유지약정, 유인금지약정 등)



연방거래위원회는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라 개별 사안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업금지약정은 그 외에도 전국노동관계법(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나 축산물유통법(the Packers and Stockyards Act)과 같은 다른 법률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반독점 가이드라인은 5명의 위원 중 3명 찬성, 2명 반대의 투표로 통과되었는데, 반대표를 던진 두 명의 위원(앤드류 퍼거슨, 멜리사 홀리오크)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위법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곧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10</sup>

<sup>03</sup> "Judge delays ban on noncompete agreements for small number of employers", CNN (2024. 7. 3.) <https://www.cnn.com/2024/07/03/business/noncompete-clause-federal-judge-ruling>

<sup>04</sup> Properties of the Villages, Inc. v. Federal Trade Commission, Case No. 5:24-cv-316, [https://ecf.flmd.uscourts.gov/cgi-bin/show\\_public\\_doc?2024-00316-59-5-cv](https://ecf.flmd.uscourts.gov/cgi-bin/show_public_doc?2024-00316-59-5-cv)

<sup>05</sup> "FTC effort to ban noncompete agreements for employees rejected by federal judge in Texas", PBS (2024. 8. 20.), <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ftc-effort-to-ban-noncompete-agreements-for-employees-rejected-by-federal-judge-in-texas>

<sup>06</sup> Ryan LLC v. Federal Trade Commission, Civ. Action No. 3:24-CV-00986 [https://assets.bwbx.io/documents/users/iqjWHBFdfxIU/rj8\\_52.B4gYs/v0](https://assets.bwbx.io/documents/users/iqjWHBFdfxIU/rj8_52.B4gYs/v0)

<sup>07</sup> "FTC Noncompete Ban Loss Leaves Agency With Dilemma on Appeal", Bloomberg Law (2024. 8. 22.) <https://news.bloomberglaw.com/antitrust/ftcs-noncompete-ban-loss-leaves-agency-with-dilemma-over-appeal>

<sup>08</sup> "FTC to Appeal Court Decision Blocking Worker Noncompete Ban", Bloomberg Law (2024. 10. 19.), <https://news.bloomberglaw.com/antitrust/ftc-to-appeal-court-decision-blocking-worker-noncompete-ban>

<sup>09</sup> FTC-DOJ Antitrust Guidelines for Business Activities Affecting Worker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2025. 1. 16.),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ftc-doj-antitrust-guidelines-business-activities-affecting-workers>

<sup>10</sup> Dissenting Statement of Commissioner Andrew N. Ferguson Joined by Commissioner Melissa Holyoak Regarding the Antitrust Guidelines for Business Activities Affecting Workers, FTC (2025. 1. 16.),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cases-proceedings/public-statements/dissenting-statement-commissioner-andrew-n-ferguson-joined-commissioner-melissa-holyoak-regarding-antitrust-guidelines-for-business-activities-affecting-workers>



## 2) 연방거래위원회의 항소 연기 및 합동 TF 발족

트럼프 대통령은 2025. 1. 22. 반독점 가이드라인에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원 앤드류 퍼거슨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sup>11</sup>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는 2025. 3. 7. 경업금지 제한규칙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20일간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에게 제출하여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방침을 재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sup>12</sup>

그런데 연방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움직임과는 별개로, 2025. 2. 26. 위원장 명의의 메모를 발표하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고, 장기간에 걸쳐 새로운 직장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보는 전방위적인 규제의 제정(Rule-making)은 과도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은 여전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내 각 부처로 하여금 공동TF를 구성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제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경업금지 제한규칙 적용을 위한 항소절차를 중단하면서도 경업금지약정 제한을 위한 TF를 발족한 연방거래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미국의 한 로펌은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커브볼을 던졌다”고 표현하기도 했다.<sup>14</sup>

## 라. 경업금지약정 제한과 관련한 연방거래위원회의 향후 예상 행보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경업금지 제한규칙 제정 이전인 2023년에 이미 경비회사 1곳(Prudential securities, Inc.)<sup>15</sup> 및 유리용기 제조회사 2곳(Anchor Glass Container,<sup>16</sup> Owens-Brockway Glass Container, Inc.)<sup>17</sup>의

경업금지약정을 다룬 바 있다.

Prudential Securities의 경우 저임금 경비원들에게까지 퇴사 후 2년간, 반경 100마일 이내 경쟁사로의 취업을 금지하였고, 위반 시 10만 달러의 위약금도 부과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Prudential Securities는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약정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경쟁사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위 유리용기 제조회사들 역시 시급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퇴사 후 1년간 전미의 어느 경쟁사로도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위 회사들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이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상의 '불공정한 경쟁방법(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의 집행을 금지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기존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또한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규칙제정이 의회가 위임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나치게 제약적인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은 반독점법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연방거래위원회가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위법성에 대해서 계속 다룰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나, 2023년과 같이 특정 산업 또는 회사에서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될 필요성이 없는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해당 약정을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시정지시를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

#### 마.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경업금지약정 제한 현황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 외에도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제니퍼 아브루조(Jennifer Abruzzo) 수석 법률고문(General counsel)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공동행위(Concerted activity)를 보장하는 전국노동관계법(the National Labor

<sup>11</sup> Andrew N. Ferguson Takes Over as FTC Chairman, FTC (2025. 1. 22.), <https://web.archive.org/web/20250127231721/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5/01/andrew-n-ferguson-takes-over-ftc-chairman>

<sup>12</sup> "Trump FTC Seeks Pause in Court Fights on Noncompete Agreements", Bloomberg Law (2025. 3. 11.), <https://news.bloomberglaw.com/antitrust/trump-ftc-seeks-pause-in-court-fights-on-noncompete-agreements>

<sup>13</sup> Directive Regarding Labor Markets Task Force, FTC (2025. 2. 26.), [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memorandum-chairman-ferguson-re-labor-task-force-2025-02-26.pdf](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memorandum-chairman-ferguson-re-labor-task-force-2025-02-26.pdf)

<sup>14</sup> FTC Chair throws a curveball (2025. 2. 27.), <https://faircompetitionlaw.com/2025/02/27/ftc-chair-throws-a-noncompete-curveball/>

<sup>15</sup> Prudential Security, et al., In the Matter of, FTC (2023. 3. 8.),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cases-proceedings/2210026-prudential-security-et-al-matter>

<sup>16</sup> FTC Approves Final Order Requiring Anchor Glass Container Corp. to Drop Noncompete Restrictions That It Imposed on Workers, FTC (2023. 6. 2.),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3/06/ftc-approves-final-order-requiring-anchor-glass-container-corp-drop-noncompete-restrictions-it>

<sup>17</sup> FTC Approves Final Orders Requiring Two Glass Container Manufacturers to Drop Noncompete Restrictions That They Imposed on Workers, FTC (2023. 2. 23.),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3/02/ftc-approves-final-orders-requiring-two-glass-container-manufacturers-drop-noncompete-restrictions>



Relations Act) 제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Memo)를 발표하였다(GC 23-08).<sup>18</sup>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퇴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단체로 퇴직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 그 주된 근거로 제시되었다.

나아가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2024. 6. 13.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에서, 퇴직 후 12개월간 회사의 영업지역에서의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할 경우 경쟁사에 취직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일으켜 근로자로 하여금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sup>19</sup>

제니퍼 아브루조 수석 법률고문은 2024. 10. 7.에도 다시 한번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기지 못한 차이만큼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GC 25-01).<sup>20</sup>

그러나 이와 같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 1. 27. 자로 제니퍼 아브루조 수석 법률고문을 비롯하여 제시카 러터(Jessica Rutter) 부수석 법률고문, NLRB 위원 그윈 윌콕스(Gwynne Wilcox)를 해임하였고, 수석 법률고문 업무대행 윌리엄 코웬(William Cowen)은 2025. 2. 14. 경업금지약정이 전국노동관계법 제7조를 위반한다는 의견서 2건을 모두 철회하였다.

이로써 경업금지약정을 전국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규율하려던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시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위원 역시 변경됨에 따라,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

## 국내의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제한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법이나 노동법보다는 헌법과 민법 등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내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103조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3년 동안 동종 내지 경쟁사에서의 업무수행을 일체 금지하고 지역적인 제한도 없는 경우,<sup>21</sup> 경업금지 제한지역이 '인근 100Km'로서 상당히 넓게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은 경우,<sup>22</sup>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 및 기술 외에 특별히 보호할 만큼 가치 있는 기술정보나 경영정보, 혹은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sup>23</sup> 그러한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한편으로는 무선통신칩 개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술의 보호가치가 높으며 사용자가

## 4

## 마치며

경업금지약정의 보상으로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므로 경쟁업체를 특정하여 2년간 전직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그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sup>24</sup>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계약체결 및 고객 협상을 담당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등,<sup>25</sup> 사안별로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가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전반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며, 다만 사안별로 사용자 내지 공공의 이익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반적으로 비교衡量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퇴직 및 이직 등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과 관련이 있으며, 그와 동시에 사용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보호를 취지로 하는 노동법적 관점과 건전한 경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적 관점이 모두 견지되어야 한다.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민주당 행정부를 거치면서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금지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로 인하여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은 당분간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국의 FTC가 했던 시도처럼 경업금지약정을 그 자체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족쇄를 씌우는 무차별적인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근로자와의 경업금지약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우리 법원의 기조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등 해외사례를 잘 참고하여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18 "Noncompete agreements violate US labor law, official says", Reuters (2023. 5. 31.), <https://www.reuters.com/markets/us/noncompete-agreements-violate-us-labor-law-official-says-2023-05-30/>

19 J.O. Mory, Inc., Case No. 25-CA-309577, 2024 WL 3010808, <https://www.tradesecretsandemployeemobility.com/assets/htmldocuments/uploads/pdf/Administrative%20Law%20Judges%20Decision-JO%20Mory%20Inc.pdf>

20 NLRB's Abruzzo says companies should pay for requiring noncompetes, 'stay-or-pay' pacts, Reuters (2024. 10. 8.),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nlrbs-abruzzo-says-companies-should-pay-requiring-noncompetes-stay-or-pay-pacts-2024-10-07/>

21 대고등법원 2023. 3. 28. 선고 2022나24026 판결.

22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 1. 11. 선고 2023나51858 판결.

23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자 2023라20044 결정.

24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자 2023라21004 결정.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30. 자 2023카합5193 결정.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개선 효과 분석 사례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  
(前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 1

## 들어가며

‘과징금 철폐’, ‘기업 저승사자’, ‘칼날 빠른 공정위’... 무협지에서나 불법한 말들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관련한 기사 제목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다. 이렇듯 국민과 언론 등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정위의 모습은 주로 기업 간 담합,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고발 혹은 수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제재하는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를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기관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는 단편적인 모습을 본 것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하는 일 중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경쟁법 집행을 통한 제재보다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경쟁 주창(Competition Advocacy) 활동이다. 경쟁 주창 활동은 경쟁의 편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하며, 단기적인 법 집행을 통한 제재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시장에서는 독과점 기업 등의 반경쟁적 행태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여러 제도적 장벽이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적인 법 집행만으로는 시장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쟁 주창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의  
중요성

공정위가 수행하는 주요 경쟁 주창 활동으로는 독과점 시장 구조에 대한 시장분석,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의 제·개정 전 사전협의, 신설·강화되는 규제 도입 전 실시하는 경쟁영향평가, 이미 도입·시행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 등이 있다. 모든 경쟁 주창 활동이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이다.

규제는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 아래 도입되지만, 종종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잠재적 시장 참여자에게 과도한 진입 장벽을 만들고, 기존 사업

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를 점검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개선을 넘어서,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 경제에서 기존의 규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로막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규제들은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하고 국민 경제의 손실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16년간 총 35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 3년간('22년~'24년) 규제개선을 추진했던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선 사례와 그간의 규제개선 활동으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 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 개선('24년)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 하나는 '차량의 수리유무'이다. 이에 중고차를 매매하는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중고차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기록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록부에 적는 사고 이력은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여 차량 후드 부위나 문 전체 교체 등의 수리를 했더라도 주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아니므로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시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실제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사고이력'이 아니라 중대한 수리인지 경미한 수리인지 '차량수리의 정도'를 기입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중고차 관련 소비자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중고차사업자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                   |       |       |
|-------------------|-------|-------|
| ⑫ 사고이력(유의사항 4 참조) | [ ]없음 | [ ]있음 |
|-------------------|-------|-------|

#### (뒷장) 유의사항

4. ⑫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 ('24년)

고급택시는 예약 및 고객 맞춤 서비스 등이 가능해 의전이 필요한 경우나 행사, 공항 픽업, 골프투어 등에서 많이 이용하며 관련 시장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 효율이 높아 택시 시장으로의 진입이나 기존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많은 편이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친환경 차량을 고급택시로 사용하려면 해당 차량이 배기량 2,400cc 또는 최고출력 160kW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고급택시로 주로 운행되는 그랜저, 카니발 등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1598cc, 54kW 모터로 구성되어 기존 배기량과 출력 기준에서는 고급택시로 운용할 수가 없었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렉서스 등 소수의 수입차밖에 없었다.

이에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으로 연비와 효율을 높인 국산차 대신 비싼 수입차를 선택하거나, 카니발이나 그랜저를 고급택시로 이용하기 위해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 대신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여 연료가 저렴한 LPG로 개조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축간거리: 2,895mm)하여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택시 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택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진료경험·만족도 등 단순 이용후기 게시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고 허용('23년)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과 시술 등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반인이 성형수술 후기 등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강남언니’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여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함이 있었다.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24년 12월)하였고, 소비자의 단순 이용 후기는 의료광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의료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라.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22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쏘카, 그린카와 같은 카셰어링과 렌터카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카셰어링과 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 대여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차량이 반납되면 사업자가 차량을 원래의 대여 장소로 옮겨와야만營業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차량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차량 대여료 이외에 차량을 서울로 회수하는 비용, 즉 편도 이용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또한 전국의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소비자들은 주거지 주변 가까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카셰어링이나 렌터카 차량의 편도 이용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이내營業을 할 수 있도록營業 구역 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법적 근거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편도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며, 전용주차구획 설치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전국 3만 9천 개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되어 교통 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효과 분석

이처럼 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추진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후생 증대를 위해 하는 일이 실제 시장과 소비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에서 2024년에 처음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그간 공정위가 추진했던 규제 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대상은 개선 이후 효과 발생 간 시차, 정량적 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 확보의 용이성,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 가정용 맥주 시장으로 선정하였다.

주류산업은 세수 확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으며, 시장구조 조사에서도 맥주 산업은 10년 이상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에 '맥주 산업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다수 발굴하여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생산과 유통, 가격과 조세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내용으로 우선 생산 측면에서 주로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장조 용량 등과 같은 제조시설의 용량 제한이 완화되었다. 또한 OEM을 허용하면서 소규모 제조업체가 대기업의 유훈 생산시설을 이용한 위탁생산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유훈 측면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체도 편의점과 대형마트와 같은 소매점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졌고, 중소 맥주 사업자는 기존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유훈할 수 있었으나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매 유훈망이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류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가 증가세에서 증량세로 전환되면서 단위당 생산비용이 높은 중소 맥주 제조업체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었다.

규제개선 이후 가정용 맥주 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주요 유훈 채널의 실제 판매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규제개선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이후에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의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다양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내 맥주 제조사는 33개에서 81개로 늘어났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맥주 브랜드 수도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 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 맥주 시장에서도 1% 미만이던 수제 캔맥주 점유율이 2022년 들어 5%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가격 측면에서도 주세 개편과 함께 수제 맥주 제조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20년 이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다양한 수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소비자의 순 후생 증대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본 결과, 2023년 기준 500ml 맥주 한 캔당 가격이 약 825원 인하되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개선 이후 시장의 다양성 확대에 따른 효과가 상당함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효과 분석은 규제개선이 단순히 관련 규정의 개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증가, 상품의 다양성 확대와 같은 시장의 가시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효과 분석은 정부의 규제개선에 있어 확실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5

##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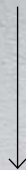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집행 못지않게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쟁 주창 활동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이를 추진하는 공정위의 역할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혁신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긍정적인 시장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 주 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이 글은 정주미,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공시제도로의 변경방안”, 「경쟁법연구」 제48권, 한국경쟁법학회, 2023. 9.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1.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현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법 제6조의2)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되었다.<sup>01</sup>

하지만 18년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이는 ①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의 지연(遲延), ② 정보공개서의 불성실한 등록신청, ③ 정보공개서의 적시성(適時性)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의 지연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의 증가와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021년 5월 가맹사업법 개정<sup>02</sup>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는 소규모 가맹본부를 포함한 모든 가맹본부로 확대되었다(법 제3조 제2항). 2024년 말 등록된 가맹본부는 8,802개이고 브랜드 수는 12,377개다.<sup>03</sup> 그런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점차 확대되어, 현재 100여 개의 방대한 내용을 등록 및 변경 등록해야 한다(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별표1]).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두 번째 원인은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의 과중에 있다. 2012년부터 공정거래조정원이 정보공개서 등록의 위탁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2020년부터 부산광역시까지도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영 제5조의2 제1항),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7년 총 12명의 등록심사자가 연간 1인당 심사를 담당하는 건수는 630.3건에서 2021년 총 22명이 1인당 담당하는 건수는 891.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sup>04</sup>

그 결과, 정보공개서의 법정 등록심사 기간은 등록신청 후 30일 내(변경등록의 경우는 20일 내)이나, 2020년 정보공개서의 건당 심사기간은 55.4일에서 2023년 86.8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sup>05</sup> 그런데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현

<sup>01</sup>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시행 2008. 2. 4.).

<sup>02</sup> 법률 제18190호, 2021. 5. 18., 일부개정.

<sup>03</sup> 2025. 4. 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참조.

<sup>04</sup> 2022. 9. 21. 한경 기사 참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214203Y>



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자는 해당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세 번째 원인은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법 제6조의2 제2항) 신청기간(가맹본부나 법인인 경우 4월 말, 개인사업자인 경우 6월 말, 시행령[별표 1의2] 참조)에 등록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연내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건수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다.

## (2) 정보공개서의 불성실한 등록신청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인의 불성실한 신청 문제가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불성실하게 등록신청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1회에 한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법 제6조의3 제1항 및 영 제5조의2 제5항),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6조의4 제1항).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등록 거부나 취소와 같은 제재가 내려지기보다는, 전화나 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서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나 취소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행

정절차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등록심사자들에게 거부나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된다. 둘째로, 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후 재신청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시스템상 접수의 순번이 뒤로 밀려나게 되고, 심사자는 이를 곧바로 처리하지 못하여 추후에 해당 내용을 재검토해야 하는 실무상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을 한 가맹본부에 성실한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고, 심사자가 정보공개서를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수차례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을 하는 가맹거래사(법 제27조 제1항)나 (국가 전문자격사가 아닌) 가맹컨설턴트의 정보공개서의 불성실한 신청에 대한 제재도 미비(未備)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거래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이러한 제재의 수준이 중대하여, 가맹거래사의 불성실한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제재가 거의 내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등록 대행 요청이 특정

유명한 가맹거래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4월 말 내지 6월 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간에 등록 업무가 폭증한 가맹거래사들이 정보공개서를 불성실하게 변경등록한 뒤, 등록심사자의 정정 요청을 받은 후에야 이를 시정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3) 정보공개서의 적시성 문제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제도하에서는 정보공개서의 적시성 문제가 있다. 가맹사업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정보를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는데, 등록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1~2년 전 과거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가맹본부의 상황은 매년 상당히 달라진 경우가 많았음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적시에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였다.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지연되게 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사전 등록제도는 정보 불균형 해소라는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가맹본부 역시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 지연으로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 모집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 가맹본부가 주소 재지인 서울시와 경기도에 정보공개서 등록 지연에 따른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많았다.

## 2.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

### (1) 비교법의 검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미국 13개 주와 중국이 있다.<sup>05</sup> 1978년 12월부터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규칙(Franchise Rule)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

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주 차원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197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80년대 말부터 일부 주에서 등록 및 심사 절차를 완화하거나, 심사 부담을 완화하였다. 유럽 연합에서 2010년부터 유일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운영하였던 스페인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18년 등록제도를 폐지하였다.<sup>07</sup>

한편, 호주는 2022년 3월부터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두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회계연도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재무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전자 포털(Franchise Disclosure Register)'<sup>08</sup>에 재무부 장관이 정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시하여야 한다.<sup>09</sup> 영국의 법전통을 따르고 있는 호주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공시된 정보공개서의 진위(眞僞) 여부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관련 분쟁은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도

<sup>05</sup> 2024. 8. 19. 뉴스1 기사 참조.  
<https://www.news1.kr/economy/trend/5512868>

<sup>06</sup> 정주미, 앞의 글, 336~337면.

<sup>07</sup> 정주미, 앞의 글, 339~340면.

<sup>08</sup> <https://franchisedisclosure.gov.au/>

<sup>09</sup> 정주미, 앞의 글, 337~338면.



록 하며, 공시 의무의 불이행만을 호주 경쟁 당국(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이 감독하여 민사 벌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호주처럼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최신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타법상 공시제도의 검토

타법상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해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공시제도는 미국의 법을 참고하여,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효한 상태로 기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sup>10</sup>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이루어진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시장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129조).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시정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법 제132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429조 제1항 및 제430조 제1항).

그런데 동법은 청약권유 합계액 10억 원 미만의 소액공모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의 발행인에게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법 제130조

10 정주미, 앞의 글, 340~341면.

11 정주미, 앞의 글, 342면.

12 2024. 12. 3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참조.

13 정주미, 앞의 글, 343면.

14 2025.1.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참조.

15 2024. 8. 19. 뉴스 기사 참조. <https://www.news1.kr/economy/trend/5512868>

16 2025. 1. 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 참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 또는 정정명령(법 제132조 제6호)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449조 제1항 제36호).

또한 자본시장법은 유통시장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매년 사업보고서(법 제159조 제1항)와 반기·분기보고서(법 제160조)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 사안이 발생한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법 제161조 제1항),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법 제163조).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시정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법 제164조 제2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법 제430조 제1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429조 제3항).

게다가 자본시장법은 발행시장에서 증권신고서 등 또는 유통시장에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발행인의 이사, 작성 지시/집행자, 공인회계사, 기재내용 확인자, 인수인/주선인 등이(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법 제12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책임 있는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9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에 자율적인 감시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기업집단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법 제26조 내지 제29조).<sup>11</sup> 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법 제37조 제1항)과 과태료(법 제130조 제1항)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 이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① 미공시, ② 지연공시, ③ 중요내용 누락 공시 및 ④ 거짓 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단순 누락 및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명령을 내렸다.<sup>12</sup>

2022년 1월부터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의무도 부과되었다(법 제13조의3).<sup>13</sup>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법 제25조)과 과태료(법 제30조의2 제1항)가 부과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연공시 및 미공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단순 누락 및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명령을 부

과하였다.<sup>14</sup>

가맹사업법도 가맹희망자에게 적시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대신, 공시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후 감독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있는 정보공개서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수단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부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공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sup>15</sup>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sup>16</sup>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공시제도와 하도급법상 공시제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잘 참고하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공시제도의 도입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



## 후방시장 사업활동 방해와 정상적 거래관행 기준 (지멘스 판결에 대한 평석)\*



손 동 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경쟁법연구 제51권 제1호(2025)에 게재한 '공정거래 2024년 판례 회고' 중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 1. 지멘스 판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의 경과

### 가. 사실관계

지멘스는 CT와 MRI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CT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는 98~99%,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는 93~99%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멘스는 자사 MRI/CT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키 발급을 요청할 때 2가지 옵션을 가지는데, 첫째로 해당 병원이 유지보수서비스를 ISO(독립수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발급(서비스키 1회 발급당 약 154만 원)하고, 둘째로 지멘스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발급해 주었다.<sup>01</sup> 공정위는 지멘스의 행위를 사업활동방해 시지남용 중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으로 지멘스가 최소행정비용으로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을 명하면서 과징금(63억 2천만 원)을 병과하였다.

### 나. 원심 판단 및 소송경과

원심에서 지멘스는, ① 이 사건 관련 시장은 전방시장인 CT, MRI와 후방시장인 유지보

수서비스가 결합한 시장인데 지멘스가 GE, 필립스, 도시바와 경쟁하면서 점유율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지보수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CT, MRI를 충분히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이 사건 관련 시장은 전방 시장인 CT, MRI시장과 구분되는 후방시장인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지멘스가 자사 CT와 MRI의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93%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보았다. 이 부분이 익숙한 주제인 후방시장 인정과 관련된 미국의 코닥(Kodak) 판결<sup>02</sup>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② 유지보수 서비스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무상제공하는 거래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유상제공하는 것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상제공이 문제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지멘스의 저작물이고,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취지에 비추어 저작물 무상제공 여부는 지멘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고, 표준장비 매매계약서와 표준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은 유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멘스의 서비스요금에도 소프트웨어

<sup>01</sup> 그 외 서비스키 발급 자체행위, 서비스키 접근권한 차별행위 등이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핵심적 사항인 서비스키 발급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sup>02</sup>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ices, 504 U.S. 451 (1992)



#### 다. 대법원(사업활동방해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시지남용 중 사업활동방해를 공정거래법령과 공정위 고시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특정하였고, 정상적 거래관행을 '해당업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이라고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위 요건에 따라 지멘스가 서비스키를 CT, MRI 구매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규범적으로 무상제공이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인지를 살피는데, 우선 거래현실에서 지멘스의 무상제공 관행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인지에 관해서는 지멘스의 서비스키 발급이 저작권자가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고 무상제공이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이라고 보면 저작물에 대한 무상제공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상적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병원은 지멘스와 ISO라는 경쟁자들을 놓고서 CT, MRI 유지보수서비스를 구입할 때, ISO 서비스요금은 거기에 지멘스에 지급하는 서비스키 요금을 더한 금액이 총가격이 되므로 그 금액과 서비스키 요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지멘스 요금을 비교해야 하는데)<sup>83</sup>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의 수직통합사업자가 하류시장 경쟁자에게 원재료를 판매할 때는 이윤압착 문제가 생기므로, 원재료가격이 동등효율경쟁자를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거나 수직통합사업자가 상류, 하류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질 때 원재료 가격이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무상제공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매출규모가 큰 거래처로 장래에도 교체 또는 추가구매 가능성이 큰 고객이라 예외적으로 무상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무상제공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에 관하여는, 지멘스의 유상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ISO는 부품교체 수익 등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손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ISO의 점유율이 성장하고 있으며, 서비스 소프트웨어 비용이 저작권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고 하기 어렵고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경쟁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공정위의 핵심적 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류시장 신규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면 정상적 거래관행이 아닌데,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154만 원이 과다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상제공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무상제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지멘스의 서비스키 유상제공만으로 동등효율 ISO가 배제되거나 신규진입 차단이 생긴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키 무상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정상적 거래관행의 규범적 역할

시지남용 유형으로 사업활동방해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고, 시행령상 원재료 구매방해, 필수인력 채용, 필수요소 접근 거절과 그 외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위 고시 지정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는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 의하면 정상적 거래관행은 사업활동방해의 객관적 성립요건인 것처럼 읽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정상적 거래관행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서비스키 무상제공이 정상적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판결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그 자체로 법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sup>04</sup> 공정거래법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

하는데, 그 내용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일 것으로 요하고 있으므로, 정상적 거래관행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제시한 조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판례는 정상적 거래관행을 현실의 거래관행뿐 아니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이라는 의미로 보는데, 그렇다면 정상적 거래관행에 위배된 행위는 경쟁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이것이 경쟁제한적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부당성 판단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업활동방해 시지남용이 문제된 쉐컴II 판결<sup>05</sup>에서, CDMA 등의 표준 필수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뎀칩도 판매하는 쉐컴이 경쟁 모뎀칩 제조사에 특허라이센스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여러 내용들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제시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관한 법리를 최초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쉐컴II 사건에서는 거래관행의 실체라든지,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쉐컴의 행위를 통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만 판단하고, 다시 경쟁제한성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사업활동방해가 문제된 사건으로, 하이트진로가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사의 대리점들을 유치한 사건에서, 판례는 처음으로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부당성의 판단요소로 설시한 바 있다.<sup>06</sup> 하이트진로가 제시한 거래조건이나 혜택이 경쟁자와 전속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것이고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경쟁사가 하이트진로의 행위로 사업활동이 곤란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쟁저해 우려가 있어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통상적 거래관행을 부당성 판단요소 중 하나로 보면서 당해 행위가 이례적인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하는 판단기준의 상위개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활동방해 시지남용의 공정위고시 내용만 보면 일응 정상적 거래관행이 객관적 성립요건으로써 그 내용을 엄밀한 사실인정의 대상으로 삼고 당해 행위가 그에 위배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 같지만, 판례와 같이 정상적 거래관행을 공정거래

03 ( )안 내용은 필자 주, 이하 같음.

04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05 2024. 8. 19. 뉴스1 기사 참조. <https://www.news1.kr/economy/trend/5512868>

06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 입법목적에 따른 경쟁질서라고 보면, 정상적 거래관행 위반은 부당성 요건의 내용이 되는 경쟁제한성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부당성 요건의 한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앞서 쉐컴II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활동방해에 관한 판례 내용에 부합한다. 공정위고시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사업활동방해의 공정거래법령상 성립요건인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와 합쳐서 보아야 하는데, 공정위고시에서 정한 정상적 거래관행에 위배되는 조건제시행위라는 요건에서 '정상적 거래관행' 부분은 부당성에, '조건제시'는 사업활동 방해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판례에서는 무상제공이 실제 거래관행인지,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후자의 측면에서는 부당성 판단에서 다룰 법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결국 이 사건 서비스키 무상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결론짓고 있다. 정상적 거래관행을 객관적 성립요건으로 보든, 부당성 요소로 보든 마찬가지라고 여길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와 같은 논리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 3. 성과경쟁 위반과 경쟁제한성

특정 행위가 정상적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논리는, 특정 행위가 경쟁, 특히 성과경쟁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경쟁이나 성과경쟁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위배되면 금지하는 식의 논리를 취하지 않고,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여 부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행위는 가격, 수량, 품질,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판례도 이에 대응하여 가격인상, 공급량감소, 혁신저해, 다양성 감소, 유력한 경쟁자 감소를 시지남용 경쟁제한 우려의 판단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강학상으로도 성과경쟁과 배제남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효과형량 심사, 경제적 비합리성 심사 등이 제시되는데,<sup>97</sup> 경쟁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심사방식은 찾기 어렵다. 특정행위가 성과경쟁이면 적법하고 성과경쟁이 아니면 위법하다는 논리는, 성과경쟁과 배제남용을 구분하는 문제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채 성과경쟁이나, 배제남용이나는 질문에 성과경쟁이니 적법하다고 답하는 셈이다. 경쟁

부합성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먼저 경쟁에 관한 정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정 행위가 직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게 되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 정도만을 제시하는데 그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며, 가격, 수량, 품질, 거래조건과 관련된 구체적 영향을 설명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이 사건에서 정상적 거래관행을 경쟁질서라고 보고 서비스키 무상제공이 이에 위배되는지를 밝히려고 하면서 무상제공 관행의 존재 여부라는 사실관계 문제 외에 규범적 관점에서 정상적 거래관행 부합 여부도 판단한다. ①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적용제외 조항을 들어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 수취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과 ② 유상제공이 대가의 다과와 관계없이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상제공이 정상적 거래관행이 아니라고 하였고, 지멘스가 서비스키를 무상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지남용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 사건 판례는, 정상적 거래관행을 경쟁질서와 동일한 의미로 보면서, 특정 행위가 경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행위는 가격, 수량, 품질,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판례도 이에 대응하여 가격인상, 공급량감소, 혁신저해, 다양성 감소, 유력한 경쟁자 감소를 시지남용 경쟁제한 우려의 판단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쟁질서에 부합하는지, 경쟁촉진적인지 하는 기준에 따라 설명하려다 보니 결론에 이르게 되는 위 논리가 공정거래법과 판례에 부합하는지 의문점을 낳는다. 우선 서비스를 유상제공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들어 정상적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①의 점)은, 공정거래법이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멘스의 행위가 적용제외되는 것인데 공정위가 이를 간과하였다는 의미인가 하는 의문을 남긴다. 물론 적용제외 규정은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적용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적용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에 따른 해석이므로,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제한하는 영향이 없어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어색함은 경쟁제한성 판단이 아니라 경쟁부합성 판단을 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유상제공이 동등효율경쟁자를 배제하지 않으니 정상적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는 것(②의 점)도, 그러면 동등효율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우만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동등효율경쟁자 기준은 문제된 행위가 동등하게 효율적이거나 더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할 것을 요하는 기준으로, 경쟁자보다 낮은 비용을 들여 재화를 생산하여 가격을 책정한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비효율적 경쟁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소집행의 위험을 낳을 수 있는 기준이다. 종래 우리 판



례는 이윤압착과 조건부 리베이트<sup>08</sup> 사건에서 동등효율경쟁자 기준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관한 입장을 밝혀 왔다. 조건부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봉쇄효과 외에 행위자, 상대방, 경쟁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반사정 고려기준의 고려요소로 제시하면서도 동등효율경쟁자 기준을 포함시키지 않았고,<sup>09</sup> 다만 사업자 측이 비효율경쟁자가 배제된 것이라는 점을 간접반증과 유사하게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하는 독자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sup>10</sup> 이윤압착 사건에서는 부당성 판단에서 동등효율경쟁자 기준을 판단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으면서도,<sup>11</sup> 기업메시징 서비스 기술을 처음 개발한 경쟁자가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메시징 사업자를 비효율적 경쟁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쟁자 비용을 기준으로 이윤압착의 정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여 동등효율경쟁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실질은 가격남용 유형인 조건부 리베이트와 이윤압착이 공정거래법상 어떤 유형의 남용 행위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동등효율경쟁자 기준을 조심스레 판단요소로 삼아 왔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비가격남용 유형인 사업활동 방해임에도 그 실질을 중시하여 가격남용 유형에 적용되는 동등효율경쟁자 기준을 판단요소로 적시하였다. 이 점에서 종래 판례와는 대비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4. Kodak 판결과의 관련성

지멘스 사건이 후방시장에 관한 최초 사건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정작 대법원은 이 부분이 상고이유로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에서만 후방시장을 인정하여 지멘스를 후방시장에서의 시지사업자로 인정하기는 하였다. 후방시장에 관한 논의는, 전방시장에서 시지사업자가 아닌데, 혹



은 시장지배력이 없는데, 그와 별도의 후방 시장을 상정하여 시지사업자의 지위나 시장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위한 도 구개념이므로, 후방시장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방시장과 별개의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후 방시장을 상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 사항 이라고 할 수 있다.

코닥(Kodak) 사건은 코닥 복사기 브랜드 내 의 부품과 보수서비스 시장에서 코닥이 독 점력을 가지는지가 문제되었다. 코닥은, 코 닉 복사기들끼리의 상표내 경쟁이 코닥 복사 기 부품과 보수서비스에서 독점력을 가지기 어렵게 하고, 소비자들도 전체 사용주기에 서의 총비용을 고려하여 구매하므로 부품 과 보수서비스가 유통되는 후방시장에서 독 점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연 방대법원은 복사기 시장의 경쟁에도 불구하 고 후방시장의 독점력을 인정하면서, 복사 기 전체 사용기간 동안의 총비용을 알기 어 렵고, 복사기 교체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과 실제로 부품시장과 서비스시장 점유율이 매 우 높고 보수서비스 시장 경쟁자들이 퇴출 되었다는 점, 그리고 부품과 서비스의 외부 구매가 가능했던 최초 약정과 달리 코닥의 부품, 보수서비스를 끼워팔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 후 사건들에서 코닥 판결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는데, 대다수 법원들은 가맹점들에 가맹본부 제품사용이 강제되는 경우처럼 구매자들이 처음부터 전 방시장 제품사용 강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후방시장에서 독점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sup>12</sup> 코닥 사건처럼 후방시장 판 매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독점력을 인정 하고 있다.<sup>13</sup>

공정거래법상 시지남용은, 시장지배적 사 업자 인정, 남용행위, 부당성을 각 구분하여 판단하므로, 이 사건에서 CT, MRI 시장과 지멘스의 부품, 보수서비스 시장이 동일한 관련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로 귀결되 는데, 판례는 별개 시장으로 보고 지멘스 부 품, 보수서비스 시장에서 지멘스가 시장지 배적 사업자라고 인정한 것이었다.

## 5. 부당성 판단기준으로서 효과형량 심사 접근

이 사건은 공정위가 서비스키의 적정가격에 대한 고려 없이 일체의 유상제공을 금지하 는 시정명령을 한 탓에 시정명령이 취소된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충 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논리에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대한 접근과 뒷받침하는 논리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적 거래관행이 부당성의 요소로서 규범적 성립요건이라 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효과형량 심사를 통 한 접근도 가능하다. 지멘스의 행위는, 수 직결합사업자가 원재료에 해당하는 서비스 키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인 ISO

가 CT, MRI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퇴출 될 우려를 낳는다면 경쟁제한의 우려를 인 정할 수 있다는 면이 있다. 이는 원료가격인 서비스키 가격과 소매가격인 유지보수서비 스 가격 차이를 포함하여 경쟁사업자의 시 장진입이나 확대의 봉쇄정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키의 특성과 저 작권자로서의 유상제공의 필요성 등에 더하 여 CT, MRI 유지보수서비스의 소비자에 해 당하는 병원 입장에서 서비스키 가격보 다는 유지보수 서비스의 최종가격에 관심이 있을 터인데, 지멘스는 서비스키 가격과 자 신이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가격의 차 이가 크면 경쟁자인 ISO가 적은 보수를 받 을 경우 지멘스 자신과 쉽게 경쟁할 수 있 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지멘스 자신의 유지 보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될 것 이라는 면에서 소비자 후생에 유리한 부분 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경쟁제한적 요소와 소비자 후생 증대적 요소를 형량하여 양자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심사할 수 있을 것 이다.<sup>14</sup> 이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비교형량하는 것으로, 종래 부당성 및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도 익숙한 방법이 다.<sup>15</sup>

<sup>08</sup>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sup>09</sup>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한 효율성을 가진 가상의 경쟁사업자 또는 실제 경쟁사업자들이 리베이트 제공에 대하여 가격 및 비용 측면에서 대처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회계적·경제적 분석(이하 '경제분석'이라고만 한다) 등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령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sup>10</sup> 손동환, 조건부 리베이트, 비교사법(2021. 11), 29쪽.

<sup>11</sup>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당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하류시장 경쟁사업자로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유력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나 확대의 기회가 봉쇄되거나 봉쇄될 우려가 있는지와 그 정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sup>12</sup> Antitrust Law Development(8th), ABA, 238~240쪽.

<sup>13</sup> 62 F. Supp. 2d 616 (D. Conn. 1999)

<sup>14</sup> 이와 같은 형량의 방법은, 이윤압착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과 MP3폰 DRM 사건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 STORY

42

사례로 알아보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액 산정서

꼼꼼히 확인 필요

44

사례로 알아보는 약관 분쟁조정

계약 해지 시 업무 착수 비용을 명목으로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

● ● ●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는 분쟁조정 스토리!

사건의 개요부터 조정결과까지, 분쟁조정 핵심 포인트를 쉽고 깊이 있게 전합니다.

복잡한 갈등도 합리적 해결로 이끄는 조정의 지혜를 지금 만나보세요.

##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액 산정서 꼼꼼히 확인 필요

###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신청인은 미용업 가맹본부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상수익에 관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2

###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2023년 6월경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교육비 3,850,000원과 거래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23년 12월부터 가맹점 운영을 개시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월평균 매출액 및 순수익, 투자금 회수기간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홍보물의 하단에는 '참고자료이며, 상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신청인이 계약기간 중인 2024년 말 피신청인에게 홍보자료의 예상수익대비 실제 매출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5,000,000원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당초 피신청인이 제공한 예상 매출보다 현저하게 낮은 매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계약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신청인에게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상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으므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3

## 배경

## 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검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정보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가맹점의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예상 최저치의 약 60%, 순수익은 약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에서 영업개시 다음 달부터 1년간의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최저 매출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2) 조정안 검토

신청인의 실제 매출액과 순수익이 피신청인의 예상 최저치에 미달함에도 피신청인이 청구한 위약금은 과중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다른 법위반 소지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외에 신청인이 현저하게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청구한 계약 해지 위약금 5,000,000원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 관련 법 규정

##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부당한 손해배상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 판결요지

분쟁당사자 모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되었다.



# 계약 해지 시 업무 착수 비용을 명목으로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



##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신청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다수의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을 신청인에게 제안한 자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 받은 자이므로 약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배달플랫폼 내 사업장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2

##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2024. 6. 5.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2025. 12. 5.까지 피신청인에게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자신의 사업장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배달앱 관리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수수료 1,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구두로 제공받은 계약 내용과 실제 체결한 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이하 ‘분쟁대상 약관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였다.

### 분쟁대상 약관조항(일부 발췌)

#### 제6조(계약의 해지 및 환불규정)

- ③ 본 계약이 이행된 이후 갑이 을에 업무(주문안내란, 가게소개란, 사장님 공지란 세팅)가 실행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비용은 20%만 반환한다.

※ 갑: 피신청인, 을: 신청인

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일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당시 이미 로고, 배너 등 디자인 발주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3

## 배경

약관법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2. 9. 고객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복사기 렌탈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던 사안에서,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직전 3개월 월평균 렌탈 서비스 요금의 50% 해당 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먼저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대상 약관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집행 비용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결제대금의 80%를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품목별 해결기준에서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에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피신청인에게 해지를 요구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에게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시점에 로고, 배너 등 디자인 발주가 이미 진행되어 제작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실제 경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 관련 법 규정

## 약관법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 4

## 과정

분쟁당사자 모두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며, 배달앱 관리대행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였다. 직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달앱 관리대행 수수료 1,980,000 원을 반환하여 합의사항 이행까지 원활히 마무리되었다.





# 조정원 NEWS

48

조정원 뉴스 Ⅰ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활동

52

조정원 뉴스 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55

조정원 뉴스 Ⅲ

공정거래문화 확산

59

조정원 뉴스 Ⅳ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



중소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원의 노력!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활동부터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까지!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조정원의 업무를 소개합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활동

### 1

#### 분쟁조정 피해 예방을 위한 YTN 라디오 인터뷰

조정원 분쟁조정1실 김도엽 실장이 2025. 4. 2.(수) YTN <조태현의 생생경제>와 인터뷰 자리를 가졌다.

김도엽 실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정원 기관 소개, 2024년 분쟁조정 업무 실적, 분쟁의 급증 배경,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대표적인 분쟁 사례와 건설 분야의 대표적인 분쟁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분쟁조정과 소송 간 차이점을 이야기하며, 분쟁조정이 갖고 있는 강점인 신속성과 구체적인 조정신청 방식 등을 청취자들에게 알렸다. 김도엽 실장의 인터뷰 내용은 2025. 4. 2. <조태현의 생생경제> YOUTUBE 채널의 공정거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 불공정거래 분야 소통창구인 민원상담 업무

조정원은 2007년 설립 이후 분쟁조정 업무 수행과 함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들을 위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2024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관련하여 일반상담 16,710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전년 13,877건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년보다 약 45% 증가한 3,730건의 피해상담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무료법률상담을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170건을 수행하는 등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뿐 아니라 민사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분쟁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현황

(단위: 건)

| 구분    | 일반상담   |               |               | 무료법률상담 |               |               |
|-------|--------|---------------|---------------|--------|---------------|---------------|
|       | 계      | 공정 등<br>6개 분야 | 기타<br>(소비자 등) | 계      | 공정 등<br>6개 분야 | 기타<br>(소비자 등) |
| 2023년 | 13,877 | 6,735         | 7,142         | 155    | 128           | 27            |
| 2024년 | 16,710 | 7,877         | 8,833         | 170    | 145           | 25            |

##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활동



▲ (2024. 4. 29.) 법위반사업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 (2024. 9. 23.)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 3

#### 중소사업자 등을 위한 공정거래 전문교육 활성화

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플랫폼인 '공정거래교육센터(<http://kofair.or.kr/edu>)'를 통해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공정거래 분야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조정원은 2024년 공정거래교육센터에 공정거래 분야별 입문 교육은 물론 실무자를 위한 심화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총 12편의 강의를 새롭게 개설하였고, 그 결과 2024년 말 누적 가입자 수 3만 4천 명, 수료자 수 4만 6천 명을 돌파하며 교육 수요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하였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여 총 16회, 80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법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법위반 내용, 심결 및 판례 등을 교육하였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여 총 3회, 1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4

##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전문상담·컨설팅 서비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등 가맹 분야 종사자의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원스톱 전문상담을 제공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 대상 애로고충상담 1,109건, 가맹본부 대상 법령 및 정책 상담 246건,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서 검토 및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 등 창업 피해 예방상담이 126건이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13회 실시하였다.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최신 개정 법령,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방법 등 가맹점 개설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서울·인천·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창업박람회에 총 6회 참여하여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전국의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창업 피해 예방상담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였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 종사자들의 고충 해소, 분쟁 예방,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확대해나감으로써 가맹 분야 종사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024. 11.) 부산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 (2024. 10.) 가맹본부 대상 교육

##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활동

### 5

#### 대리점 분야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고충이 있거나 법·정책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제공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리점 대상 애로·고충 상담 191건, 공급업자 대상 법·정책 상담 57건, 대리점 대상 공정위 신고지원 상담 18건이었다. 또한 대리점주 대상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12회 실시하였다. 특히 생업으로 인해 교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대리점주를 고려하여 가전/가구·의류/생활용품·식음료·제약/의료기기의 4개 업종별로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공하였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대리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쟁의 예방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분쟁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서 기여할 계획이다.



◀ 대리점 교육영상 첫 번째 캡처 화면

▶ 대리점 교육영상 두 번째 캡처 화면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 1

#### 2024년 분쟁조정 역대 최대 접수 처리

최초로 연간 접수 건수  
4,000건 돌파,  
특히 온라인플랫폼·약관·  
건설하도급 증가세  
두드러져

#### ◎ 분쟁조정 접수 현황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년 전(2,846건) 대비 42% 증가하여 역대 최대 접수 건수를 기록하였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 ♣ 2024년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     | 접수현황  | 처리현황 및 유형    |            |            |            |
|-------|-----|-------|--------------|------------|------------|------------|
|       |     |       | 계<br>[A+B+C] | 성 립<br>[A] | 불성립<br>[B] | 종 결<br>[C] |
| 2024년 | 소계  | 4,041 | 3,840        | 1,450      | 465        | 1,925      |
|       | 공정  | 1,795 | 1,603        | 624        | 150        | 829        |
|       | 가맹  | 584   | 587          | 246        | 96         | 245        |
|       | 하도급 | 1,105 | 1,107        | 375        | 113        | 619        |
|       | 유통  | 29    | 29           | 16         | 3          | 10         |
|       | 약관  | 457   | 429          | 152        | 96         | 181        |
|       | 대리점 | 71    | 85           | 37         | 7          | 41         |

#### ◎ 분쟁조정 처리 현황

2024년 전체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도(3,151건) 대비 22% 증가하였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하였고,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62백만 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06백만 원으로 파악된다.

\* 피해구제액: 성립사건의 조정금액(직접 피해구제액) + 절약된 소송비용(간접 피해구제액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포함)

##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 ㉠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조정원은 생업을 이유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분쟁당사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133건을 실시하는 등 분쟁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횟수: ('22년) 87건 → ('23년) 107건 → ('24년) 133건

앞으로도 조정원은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 ㉡ 앞으로의 분쟁조정 업무추진 계획

2025년에도 건설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원은 그간 축적된 전문적인 조정역량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분쟁당사자 간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더 능동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아울러 그간 쌓아온 분쟁조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중소기업자 대상 제도 안내를 강화하여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2

## 영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주 대상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영세 가맹점사업자·대리점주를 위한 소송 대리지원, 법률문서 작성 지원 등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송 대리지원의 경우 2024년에 가맹 분야 14건, 대리점 분야 1건을 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법률문서 작성 지원의 경우 2024년 가맹 분야에서는 62건, 대리점 분야에서는 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 절차나 문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주의 피해 구제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주를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분쟁조정 절차와 연계를 강화하여 잠재 수요자를 파악하며, 영세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기여하려고 한다.



## 공정거래문화 확산

### 1

#### 공정위·조정원,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 (2024. 12. 16.)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동으로 2024. 12. 16.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 간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며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80여 기업에서 1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 모범업체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과 담당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 케이씨, 화신, 한국인삼공사, 롯데홈쇼핑, 희상건설 등 6개사가 참석하여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및 관행을 개선한 사례, ▲협력사 사업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사례 등을 소개하였고 구체적인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 <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

- ① **(삼성전자)** 최신 기술·노하우를 협력사에 전수해 경영을 지원하고 A/S 금형 보관료 지급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금형 업종에서의 공정거래 체계화 추진
- ② **(화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기술·안전·경영교육)을 제공하고 협력사에 대한 펀드·기금 운용 및 연동계약 활성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 안정적 성장 지원

#### <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및 관행 개선 >

- ③ **(한국인삼공사)** 가맹점 사업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가맹본부) 주문 접수를 오프라인(가맹점)에 전달하는 O4O(On-line for Off-line) 서비스 및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계약종료 유예제도 운영
- ④ **(희상건설)**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안정·건설품질 악화 방지를 위해서 기성금 조기 지급 및 자금유동성 지원, 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대금지급 문화 개선

#### < 협력사 사업 지원·육성을 통한 산업 전반 효율성 제고 >

- ⑤ **(롯데홈쇼핑)** 중소기업공인과 예비 크리에이터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라이브 커머스 참여를 희망하는 크리에이터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산업 전반의 일자리 창출 기여

#### <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

- ⑥ **(케이씨)** 협력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사 VOC를 청취하고 문제를 개선하며,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에 있어서 분쟁청취 창구 운용·대표이사 직보체계·분쟁조정 실 운영 등 SOP 구축

아울러 조정은원은 공정거래협약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협약을 도입하지 않거나 협약체결 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 덧붙여 협약 제도와 평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서술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정책안내서」를 발간하여 관심 기업과 유관 기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 2

CP 법제화를 계기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2024. 6. 21.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CP 및 CP등급평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CP등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AA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최대 20%까지의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등, CP도입 및 CP등급평가 신청의 유인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조정원은 보다 적극적인 CP문화 확산을 위하여 CP 관심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조정원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기업집단 및 10대 건설사 등 다양한 CP 관심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기존 서울에서 개최되는 CP행사에 참여가 어려웠던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영남, 호남에서 각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CP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였다.

CP등급평가 신청기업 수는 2013년 등급평가 진입장벽 확대 및 2014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폐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ESG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사의 감시의무를 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누적됨에 따라 CP등급평가 신청기업 수가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2024년에는 신청기업 수가 58개\*에 달하였다.

\* 이전 3개년 신청 현황: 2021년 10개, 2022년 16개, 2023년 28개

특히 2024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CP 및 CP등급평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재도입되는 등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향후에도 CP등급평가 신청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CP포럼 및 시상식

## 3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교육 지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경영, 지원 및 통제 등 전반적인 영업활동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가맹희망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주요 재무현황부터 가맹점 연평균 매출, 가맹점 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다. 그 후 영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게 될 가맹본부를 결정함으로써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조정원은 2013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4,825개의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 등록하면서 조정원 관할 가맹본부 수는 영업표지 기준 3,227개로 확인된다.

한편, 조정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서 관련 주요 DB정보 중 공개 가능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정책집행에도 기여하는 등 정보공개등록 제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4

공정거래  
이행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

조정원은 2021년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를 시작하였고, 2023년 연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도 맡게 되었다. 조정원이 이행관리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연의 업무인 정책수립 및 법집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조정원은 사업자의 자발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 5월 기준, 조정원은 동의를결 이행관리 6건과 시정조치 이행관리 2건을 함께 수행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의 이행관리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조정원은 공정거래 이행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특히 조정원은 공정거래 이행관리 절차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도출하고 그 이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 이행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

### 1

#### 실질적인 연구수요를 토대로 공정거래 분야 연구 수행

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 연구조직으로 정책연구사업, 이슈 검토,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정거래 영역 전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는 내부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수요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사업 3건, 이슈 검토 12건을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물은 조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2024년 이슈 검토 실적

| 순번 | 연구과제명                                              |
|----|----------------------------------------------------|
| 1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I - 가정용 맥주 시장을 중심으로 -             |
| 2  | 국내 Compliance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비교 고찰                    |
| 3  | 골판지 제조·유통 등에 대한 시장분석                               |
| 4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II - 인천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독점사업권 폐지 관련 - |
| 5  | 가정용 캔맥주 수요추정을 통한 규제개선의 후생효과 분석                     |
| 6  | 2024년 경쟁영향평가 사례분석 -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         |
| 7  | 호텔예약플랫폼의 최대대우 조항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
| 8  | [비공개] ○○○에 관한 규범적 판단 기준 및 개선 과제                    |
| 9  | 공법과 사법 간 틈 메우기 - 국고행정에 관한 독일의 경쟁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
| 10 | 편의점 산업 시장 현황 검토 - 체인화 편의점 사업체를 중심으로 -              |
| 11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과 관련한 경제적 단일체 항변에 대한 고찰                 |
| 12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IV

## 2

###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연구저변 확대에 기여

조정원은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총 3건의 연구를 지원하였다.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조정원이 지정주제를 제시한 뒤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제안을 공모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다루기 어려운 기초 학술연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논의가 필요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정원은 2024년 아래와 같이 총 3건의 학술연구를 지원하였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실무계 등에 배포해 공정거래 분야 학술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고 연구결과물은 조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2024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실적

| 순번 |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br>(소속)           |
|----|---------------------------------------------------|-------------------------|
| 1  | 디지털 경제에서 온·오프라인 서비스 간 관계를 고려한<br>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한 연구 | 홍대식 교수<br>(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 2  | 미국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신 법집행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윤경수 교수<br>(가천대 경제학과)    |
| 3  | EU의 배제남용 행위 규제와 관련한 최근 법집행 변화에 관한 연구              | 조혜신 교수<br>(한동대 법학부)     |

##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

### 3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개최

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는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행사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발표와 외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뤄진다.

2024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총 5건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 ✦ 2024년 학술행사 개최 실적

| 순번 | 학술행사                                                              | 개최일           |
|----|-------------------------------------------------------------------|---------------|
| 1  | 조정원-한국상사판례학회-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br>: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 2024. 5. 17.  |
| 2  | 조정원-한국소비자원 공동 연구성과 발표회<br>: 평가분석 고도화를 통한 경쟁·소비자 정책 발전 방안          | 2024. 8. 27.  |
| 3  | 조정원-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br>: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 문제에 관한 이슈와 쟁점           | 2024. 9. 27.  |
| 4  |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 발표회<br>(한국경쟁법학회 공동주최)                           | 2024. 10. 25. |
| 5  | 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한국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br>: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  | 2024. 11. 29. |

### 4

#### 경쟁영향평가 업무로 시장경쟁 활성화에 기여

아울러 2023년부터 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와 복잡·다양한 전문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 수요에 대응하여, 경쟁영향평가 전담팀(경쟁영향평가 TF팀)을 신설하여 경쟁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46개 안건, 130개 규제사무에 대하여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총 23건의 규제사무의 경쟁제한성 완화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중 17건의 대안이 반영되어 규제안이 폐지·완화되었다. 또한 의원입법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협의를 누락된 797개 의안을 탐지하여 경쟁제한규제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다.



# 컬처& 라이프

64

사계절 공정여행

자연에서 짓다·놀다·먹다 그리고 읽다  
고창

70

우리가 몰랐던 위인 이야기

공정한 언론의 선구자  
조지프 풀리처

72

문해력이 실력

맞춤법,  
나도 모르게 틀리고 있었다



공정함이 깃든 일상 속 문화 이야기!

공정여행으로 실천하는 착한 소비, 위인에게 배워보는 공정한 삶, 문해력을 높이는 맞춤법 정보까지,  
다채로운 문화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연에서  
짓다  
놀다  
먹다

그리고 읽다

# 고창

고속도로를 벗어나  
푸른 산길을 굽이굽이  
돌다 보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위치한  
상하농원으로, 지도상에선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 속에  
지어진 거대한 테마파크 같다.  
시원하게 부는 바람 때문일까,  
초록빛이 절정을 이루는  
푸른 잎 때문일까. 고창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간지럽게 일렁인다.

글·사진 편집실



\*공정여행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여행을 말한다.  
현지의 특산물이나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그 지역 고유의  
문화를 체험하며,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공정여행을 즐기는 방법이다.





## 상하농원



-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상하농원길 11-23
- 🕒 연중무휴, 09:30 ~ 21:00  
(18:00 이후 일부 시설 운영)
- 💰 대인 9,000원/ 소인 6,000원  
(고창군민 및 31개월 미만 유아 무료)
- ☎ 1522-3698
- 🌐 www.sanghafarm.co.kr

상하농원은 푸른 논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농장이다. 평범한 농장이 아니라, 농촌 문화와 먹거리 체험, 힐링 요소가 결합된 농촌형 테마파크다. 약 10만 평 규모의 넓은 대지에 동물농장, 공방, 레스토랑, 마켓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다.

농원 중앙에는 넓은 텃밭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 땅콩, 고추, 감자, 갯, 고구마 등의 다양한 작물과 로즈메리, 스피어민트, 라벤더 같은 향기로운 허브들이 자라고 있다.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는 셰프들이 직접 수확하여 상하농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인 '상하키친'에서는 햄공방에서 만든 신선한 햄과 소시지, 제철 식재료로 선보인 요리를 맛볼 수 있고, '농원식당'에서는 직접 키운 쌈채소와 젓갈 그리고 김치까지 지역 제철 식재료로 가득 채운 밥상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흔한 한 끼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지역경제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보탬이 된다.





- 1, 2.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 '동물농장'과 '체험농장'.
3. 소들이 한가로이 휴식하고 있다.
4. 상하농원에서는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한다.
5. 전통 장류와 김치 등을 생산하는 '발효공방'.
6. 공방에서 생산되는 수제 제품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
7. 순백의 꽃, 샤스타데이지가 여행객을 반긴다.

텃밭 주변으로는 멋스러운 공방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다. 국내산 무항생제 돈육을 90% 이상 케이싱에 채워 넣어 소시지를 만드는 '햄공방', 믿을 수 있는 지역 농가의 과일을 엄선해 잼과 청으로 만드는 '과일공방', 상하농원 계란과 국내산 아카시아꿀로 편백나무틀에 구워 카스텔라를 만드는 '카스텔라공방', 고창산 대두를 전통방식으로 발효해 된장과 장류, 김치, 계장을 만드는 '발효공방',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볶은 참깨를 저온압착하여 기름을 만드는 '참기름공방'이다. 이처럼 공방에서는 농부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한 먹거리가 매일 만들어지고 있다.

상하농원의 가장 큰 매력은 단지 좋은 식재료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체험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여행객은 텃밭에 작물을 심고 수확하며 농부의 노동을 체험하고, 식재료를 만지고 요리를 해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게 된다.

다양한 동물과 교감하는 체험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태어난 지 몇 주 되지 않은 송아지, 양증맞은 미니 돼지, 구름처럼 새하얀 산양과 가까이에서 만나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다. 체험목장은 그야말로 살아 있는 교실인 것이다.

상하농원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다. 비옥한 땅에 식재료를 심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전하고, 건강한 생산을 통해 먹거리의 가치를 높이는 곳이다. 생산과 소비, 자연과 인간이 맞닿는 지점인 셈이다.





1



2

책의  
은하계로  
떠나다

## 책마을해리

전북 고창군 해리면, 바다 가까이의 조용한 시골 마을 한켠에 자리한 낡은 초등학교가 책과 예술이 있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다. 바로 책마을해리다. 1939년에 개교해 2001년에 폐교한 나성초등학교 나성분교가 마을 촌장님과 주민들, 문화활동가와 예술가들이 함께 조금씩 보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요약하면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 마을이다. 책마을해리를 걷다 보면 책의 은하계에서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교실은 작은 출판사와 서점, 공방, 체험실로 변했고, 복도에는 손때 묻은 책들이 줄지어 있다. 건물 구석구석엔 지역 작가들의 시와 그림, 글귀가 붙어 있어 마을 전체가 한 권의 책처럼 느껴진다.

여행객은 이곳에서 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을 만드는 체험, 활판 인쇄기 사용 체험, 동화 쓰기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책의 창작자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3

- 전북 고창군 해리면 월봉성산길 88
- 금, 토, 일 10:30 ~ 18:00
- ₩ 입장료 8,000원 or 1인당 책 한 권 구입
- ☎ 063-563-9173
- 🌐 <https://harrybook.k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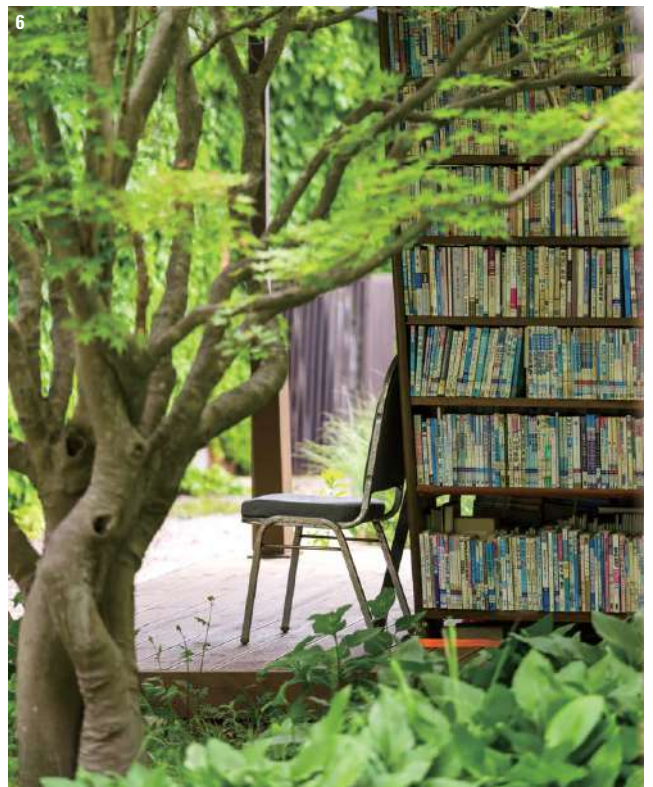
책마을해리는 책숲시간의숲, 바람언덕, 종이숲, 버들눈도서관, 책감옥, 마을사진관, 한지활자공방, 마을책방 등 다양한 테마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교실 두 칸을 합쳐 만든 '책숲시간의숲'은 약 12만 권의 책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뽁뽁하게 채워져 있는데, 캠프, 강연, 심포지엄, 포럼 같은 행사도 열린다. 교실 뒤편에 위치한 '바람언덕'은 소규모 공연과 영화제가 열린다.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 사이에 만든 객석이 아담해 더 특별해 보인다. '버들눈도서관'은 봄의 전령 버들눈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으로, 그림책과 청소년 도서가 있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도서관이다. 교실과 복도를 터서 구분을 없앤 공간으로 네 벽면에 빈틈없이 꽂힌 책과 앉거나 기대기 좋게 군데군데 놓아둔 의자와 쿠션 덕분에 편하게 뒹굴며 책에 빠져들기 좋다. 가장 흥미로웠던 '책감옥'. 일단 입장하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만 출소할 수 있는 이색 공간이다. 낮은 책상과 침대 하나, 책장 두어 개가 전부인 이곳에서 책 읽는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동학평화도서관(트리하우스)'은 플라타너스 위에 지어진 멋진 오두막 도서관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고 아늑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경험은 어린 시절의 로망을 실현시켜 준다. 금방이라도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뛰어내릴 것만 같은 곳이다.

폐교에서 문화마을로, 잊힌 공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붙여넣은 책마을해리. 그렇게 서너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나면, 여행자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남을 것이다. 마치 책 한 권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처럼.



1. 플라타너스 위에 지어진 '동학평화도서관'.
2. 책마을로 통하는 북카페 '책방해리'.
3. 책마을해리는 공간마다 책으로 가득하다.
4. 운동장이었던 '책밭'의 상괘이 조형물.
5. 지역 어르신들이 작가가 되어 책을 출판하기도 한다.
6. 새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야외도서관.
7. 여행자가 잠시 쉴 수 있는 책 모양의 의자.



공정  
언론  
의  
선구자

저널리즘의 아버지, 풀리처

조지프 풀리처(Joseph Pulitzer, 1847~1911)는 헝가리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 이후 1868년 독일계 신문인 <웨스틀리체 포스트>의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부자와 정치인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해 권력층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을 정도로 매우 열정적인 기자였다.

기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두각을 나타낸 풀리처는 이듬해에 미주리 주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1873년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웨스틀리체 포스트>의 경영자가 되었다. 이후에 다른 언론사를 인수 합병해 세운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까지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문이 되었다. 1883년, 또 다시 <뉴욕 월드>를 인수한 풀리처는 '재미없는 신문은 최악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몇 년 사이에 전미 발행부수 1위의 신문으로 만들었다.

당시 언론은 부자와 정치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많았지만, 풀리처는 달랐다. 가난한 사람, 노동자, 이민자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실었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폭로했다. 당시 파나마 운하 사건의 부정행위를 감추려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에 맞서며 진실을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조지프 풀리처

글 편집실

Joseph  
Pulitzer  
(1847. 4. 10 ~ 1911. 10. 29)



폴리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 1855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선물했는데, 미국이 받침대를 만들 예산이 없어서 자유의 여신상이 항구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때 폴리처는 <뉴욕 월드> 1면에 이렇게 썼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세워야 한다.” 그는 신문을 통해 전 국민 모금 운동을 벌였다. 심지어 어린이와 노동자, 이민자까지 모금에 참여했고, 마침내 기부금으로 받침대가 완성되어 자유의 여신상이 지금의 위치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 언론인의 노벨상, 폴리처상

폴리처는 컬럼비아대학교에 신문학과를 설립해 언론인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썼다. 또 자신의 유산으로 공정한 보도를 격려하기 위해 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문학상 중 하나인 ‘폴리처상(Pulitzer Prize)’이다. 폴리처가 사망한 뒤 1917년에 처음 시행된 이 상은 매년 공공의 이익과 문화적 발전에 기여한 기자, 작가, 사진가 등을 시상해 그의 언론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폴리처는 단순히 신문을 팔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다. 그는 늘 ‘정의는 밝혀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기사를 썼고, 국민의 편에 서는 언론을 만들고자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기자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진실과 정의를 향한 보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언론인은 다리 위에서  
국가라는 배를 감시하는 사람이고  
그 자신의 임금이나  
고용한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다.”

“신문에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법률과 도덕보다도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한다.”

“잘못된 일을 공격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 맞춤법, 나도 모르 틀리 고 있다



맞춤법은 '교양의 언어'이자, '상대에 대한 신뢰'이다. 뭐가 그리 거창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쓰고,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것은 정확한 의사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올바른 맞춤법을 알아두자.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은근히 헛갈리는 맞춤법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참고 <최소한의 맞춤법>



## 바래다 VS 바라다

‘소비자 권리가 잘 지켜지길 바래요’라고 쓰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누군가 이 말을 듣는다면 ‘권리가 바랬다고?’라고 물음지도 모른다. ‘바라다’와 ‘바래다’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특히 ‘바라다’를 활용할 때 ‘바래요’라고 쓰는데, 틀린 표현이다.

### 바래다, 바래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라는 뜻이다.

### 바라다, 바라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바라다’의 어근인 ‘바라’를 살려서 ‘바라’라고 쓰는 것이 맞다.

## 어떻게 VS 어떡해

‘어떻게’와 ‘어떡해’만큼 혼란스러운 단어가 또 있을까. 생김새뿐만 아니라 발음마저 비슷한 탓에 헷갈리기 쉽다. 두 단어를 구분해 사용하려면 다음처럼 생각하면 된다. 카페에 갔을 때 창가 쪽이나 구석진 곳처럼 각자가 즐겨 찾는 자리가 있듯, 단어들도 저마다 문장에서 선호하는 자리가 있다.

### 어떻게

‘방법’이나 ‘수단’을 물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 어떡해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다. 감정이 담긴 말로, 걱정하거나 놀랄 때 자주 사용한다.



# KOFAIR NOW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식

1

### 2025년 시무식 개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조정원은 2025. 1. 12.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5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은 각 분야 우수직원 표창과 우수조정인, 청렴부서·청렴우수자 시상 및 최영근 원장의 신년사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최영근 원장은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적극적인 조정절차 수행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기반 구축 ▲연구활동 시 긴밀한 소통 및 법집행 지원 역할 강화 ▲기관 인지도 제고 등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

### 2025년 동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동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156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지원하여 역대 최대 지원 규모를 기록하였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경험하였다.

3

### 일본 변호사협회, 조정원 방문



2025. 1. 17. 일본 변호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연구팀이 조정원을 방문했다. 이 날 조정원은 기관 주요 업무 및 분쟁조정 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공정거래법 분야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4

#### 조정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조정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은 2025. 3. 1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유원은 중소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하여 공정거래 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5

#### 2024년 분쟁조정 실적 발표 기자회견

조정원은 2025. 3. 19. 공정거래위원회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2024년 분쟁조정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영근 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최대 접수건수를 기록한 2024년 분쟁조정 실적을 발표하였고, 아울러 조정원 기관 소개 및 분쟁조정 제도의 강점 등을 알렸다.



6

#### 2025년 3월, 첫 공정거래 정기 집합교육 개시

조정원은 중소기업자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집합교육을 2025년 3월에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일반교육<sup>(평수달)</sup>, ▲하도급법 일반교육<sup>(출수달)</sup>을 번갈아 진행할 계획이다.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 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7

##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2025. 4. 1.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 스물네 번째 기념일을 맞이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분쟁조정 업무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구제에 기여한 공로로 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전민정 감사정보화팀장, 한대훈 가맹유통대리점팀장, 조상길 과장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받아 의미를 더했다.

## 8

## 조정원,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학술행사 공동 개최



조정원은 (사)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와 함께 2025. 5. 16.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법무법인 법여울 김창균 변호사), ▲약관규제법과 부당특약(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 ▲부당특약과 행정규제(법무법인 강남 임신혁 변호사)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의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 9

## 세종대학교 학부생 대상 공정거래 교육 진행



2025. 5. 21. 세종대학교 법학부 학생 20여 명이 조정원에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세종대학교에서 공정거래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공정거래 인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날 정연홍 기획조정실장이 강의를 맡아, 세종대학교 법학부 학생들에게 조정원 기관 소개 및 분쟁조정 제도 등을 알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어려워하는 기업을 위한

#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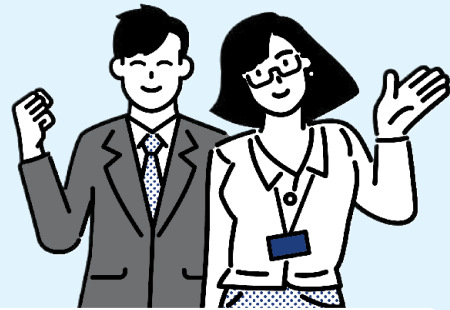
원재료 유무 및 비중 확인,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약정 컨설팅



#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전문기관 연계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진행 (원재료 확인, 연동약정 컨설팅)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전문기관과 연계한 1:1 맞춤형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및 비중 확인, 연동약정 체결을 앞둔 기업  
연동제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한 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수급  
사업자\*

\* 다만, 원사업자 지위에 있는 중견기업은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 가능

### 신청기간

상시모집(~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분야

**유형1** 원재료 확인서 발급 **유형2** 연동약정 컨설팅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비용       |
|-----------------------------|-------------------------------------------------------------------------------|--------------------------------------|----------|
| <b>유형1</b><br>원재료<br>확인서 발급 | 원가분석을 통해 하도급대금 중<br>원재료(재료비)금액을 확인하여<br>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br>및 비중을 명시한 확인서 발급 | 수급사업자<br>(중소기업)                      | 전액<br>무료 |
| <b>유형2</b><br>연동약정<br>컨설팅   | 연동 대상 요건 검토, 기준지표<br>제안 등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br>컨설팅 지원                               | 원사업자<br>(중견·중소기업)<br>수급사업자<br>(중소기업) |          |

\*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 추진절차



### 제출서류

신청서 및 부속 서류 등(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  
연동지원본부 누리집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connectwith@kofair.or.kr)
- 연동지원본부 누리집 접수(https://connect.kofair.or.kr)

### 문 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이행관리팀(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전화**  
1855-1490(내선번호 3)

**전자우편**  
connectwith@kofair.or.kr

**누리집**  
https://connect.kofair.or.kr  
하도급대금연동제.kr



# 공정거래 교육센터

@ edu.kofair.or.kr

공정거래 교육의 길라잡이,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활용하세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부터 공공기관, 중견기업 공정거래분야 실무자까지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대리점거래

